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621호 2023. 3. 1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3-19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1
- 정선군 고시 제2023-21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5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3-238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59
- 정선군 공고 제2023-243호 정선군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60
- 정선군 공고 제2023-284호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71
- 정선군 공고 제2023-298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안) 공람·공고.....78

○ 정선군 공고 제2023-304호 2023년 정선군 명예군민 추천 공고.....	7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8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4호 정선군 스톱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8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95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3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7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2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8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3-19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3월 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최초 지정 후 20여년이 경과된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물 계획상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고한·사북지역의 도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사북읍 도시지역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정선 군관리계획(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고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①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52-1전 일원	19,342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②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35-1전 일원	51,894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③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62,250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④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106-1대 일원	51,933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⑤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62-14대 일원	48,709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⑥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65-4대 일원	49,900	강고 제83호 (02.4.15)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	준 주 거	일 반 상 업	자 연 녹 지
합 계	284,028	66,940	9,547	201,214	6,327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19,342	-	-	19,342	-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51,894	-	-	51,894	-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62,250	17,040	9,547	35,663	-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51,933	-	-	51,933	-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48,709	-	-	42,382	6,327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49,900	49,900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2	304	1	91	1	213	-	-
중로	1	213	-	-	1	213	-	-
소로	1	91	1	91	-	-	-	-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8	15	보조 간선 도로	213	3호 광장 고한리 149-2도	고한리 273천	일반 도로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2,712 (91)	중로 2-8 고한리 273천	고한구역계 고한리 237대	일반 도로	종합 운동장	정선고 제5호 (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자동차정류장

(1)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고한읍 고한리 273-12천 일원	5,043	강고 제300호 (03.12.13)	

2) 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2	491	2	491	-	-	-	-
소로	2	491	2	491	-	-	-	-

(2)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9~10	집산도로	409	고한리 136-29도	소로 1-18 고한리 산89-1천	일반도로	지장천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14 (82)	소로 2-30 고한리 1410-6대	소로 1-13 고한리 산274-4	일반도로	선데일 콘도	강고 제51호 (05.3.2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3) 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9	1,178	2	164	3	738	4	276
대로	1	46	-	-	-	-	1	46
중로	1	648	-	-	1	648	-	-
소로	7	484	2	164	2	90	3	230

(2)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보조 간선 도로	71 (46)	구역계 고한리 124-4첵	중로 2-7 고한리 124-9대	일반 도로	고한남부 장로교회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중로	2	7	16	보조 간선 도로	1,953 (648)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호 (73.7.12)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도로	125	대로 3-2 고한리 121-24도	소로 2-28 고한리 산297-57임	일반 도로	-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1	23	10	국지 도로	39	중로 3-8 고한리 120-92도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25-10대	5호 광장 고한리 125-11대	일반 도로	국도 38호선	정선고 제1호 (10.7.9)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63	소로 1-13 고한리 산297-57도	중로 2-7 고한리 274-276도	일반 도로	사북택시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20)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99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호 (02.5.16)	
기정	소로	3	35	6	국지	152	소로 1-11	5호 광장	일반	-	정선고 제5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고한리 274-110도	고한리 274-196대	도로		(16.4.19)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58)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7호 (73.12.26)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4) 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9	1,341	1	53	4	933	4	355
중로	2	691	-	-	1	663	1	28
소로	7	650	1	53	3	270	3	327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6	보조 간선 도로	1,953 (663)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호 (73.7.12)	
기정	중로	3	14	12	집산 도로	291 (28)	중로 2-7 고한리 88-2도	고한리 84-8잡	일반 도로	고한읍 사무소	강고 제28호 (10.7.23)	
기정	소로	1	12	6~ 10	국지 도로	100 (53)	중로 2-7 고한리 62-6도	학교7 고한리 74학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2	25	5~ 8	국지 도로	195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소로 2-26 고한리 88-1도	일반 도로	고한 우체국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48	중로 2-7 고한리 94-8도	소로 2-25 고한리 91-21도	일반 도로	제일 감리교회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7	중로 2-7 고한리 104-75도	소로 3-39 고한리 91-37대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호 (19.2.15)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65 (20)	소로 2-27 고한리 274-36대	수질오염방지시설 고한리 274-209전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호 (02.5.16)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228	소로 2-25 고한리 274-36대	중로 2-7 고한리 87-2도	일반 도로	고한 파출소	정선고 제2호 (16.4.15)	
기정	소로	3	41	4	국지 도로	79	중로 2-7 고한리 104-2도	소로 3-22 고한리 274-36대	일반 도로	-	강고 제27호 (73.12.26)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2,189	-	
기정	⑥	고한역전1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96-91차 일원	1,277	강고 제207호 (98.10.15)	
기정	⑰	고한18리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91-36대 일원	912	정선고 제96호 (10.7.9)	

5)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8	1,419	2	71	3	856	3	492
중로	2	660	1	18	1	642	-	-
소로	6	759	1	53	2	214	3	492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중로	1	4	20	국지 도로	61 (18)	중로 2-7 고한리 274-14대	중로 3-8 고한리 66-20대	일반 도로	엘리트 학원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중로	2	7	16	보조 간선 도로	1,953 (642)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 제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2	6~1 0	국지 도로	100 (53)	중로 2-7 고한리 62-6도	학교7 고한리 74학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 제257호 (73.12.26)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67	소로 2-24 고한리 62-405도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강고 제257호 (73.12.26)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7	중로 2-7 고한리 98-9철	소로 2-23 고한리 62-394대	일반 도로	고한농협	정선고 제16호 (10.7.9)	
기정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4 (31)	중로 2-7 고한리 97-4철	고한역 고한리 97-55철	일반 도로	-	정선고 제2호 (02.5.16)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공나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	강고 제257호 (73.12.26)	
기정	소로	3	40	7	국지 도로	407	소로 1-12 고한리 96-60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 제300호 (03.12.13)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7,843	-	
기정	⑩	고한 역전2 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274-64도 일원	7,843	정선고 제29호 (02.5.16)	

6) 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130	3	547	2	443	1	140
중로	1	140	-	-	-	-	1	140
소로	5	990	3	547	2	443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기정	중로	3	8	12	보조 간선 도로	582 (140)	8호 광장 고한리 47-1도	소로 1-11 고한리 산260-11임	일반 도로	-	건고 제29호 (73.7.12)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63	소로 1-10 고한리 65-4대	소로 1-11 고한리 260-9임	일반 도로	한국전력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1	8	10	국지 도로	236	소로 2-15 고한리 63-40임	소로 2-17 고한리 65-15대	일반 도로	동원 복지회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도로	710 (48)	중로 3-8 고한리 산260-7도	학교 7 고한리 80-39학	일반 도로	고한 중고교	강고 제27호 (73.12.26)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82	소로 3-16 고한리 63대	소로 1-9 고한리 63대	일반 도로	고한APT	강고 제26호 (79.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89 (361)	소로 3-14 고한리 산2-265임	소로 1-7 고한리 산260-9임	일반 도로	고한 어린이집	강고 제27호 (73.12.26)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중 일원	25,495	강고 제83호 (02.4.15)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 계획

1)단위대지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	◦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업지역	◦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동건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2)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여러 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3)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위치 지정	

4.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15,894	
기정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10,851	
기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5,043	

2)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46,389	
기정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15,884	
기정	B2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17,443	
기정	B3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13,062	

3)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46,374	
기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11,081	
기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5,547	
기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577	
기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4,400	
기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3,626	
기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16,011	
기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2,844	
기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2,288	

4)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35,681	
기정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17,101	
기정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2,272	
기정	D4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912	
기정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2,806	
기정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3,029	
기정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8,284	
기정	D8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1,277	

5)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30,854	
기정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12,163	
기정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795	
기정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3,203	
기정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3,088	
기정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1,361	
기정	E6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7,843	
기정	E7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1,511	
기정	E8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890	

6)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	36,061	
기정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12,640	
기정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4,940	
기정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4,091	
기정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14,390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1) 불허용도(변경)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기 정	변 경		
1 일반 상업 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기 정	◦건축자재 관련업종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변 경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2 고 한 1구역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좌 동	
3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좌 동	

2)권장용도(변경없음)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 전층권장용도

3)건폐율(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준주거지역	70% 이하	(구) 고한초교 주변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4)용적률(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일반상업지역	400 ~ 500	500 ~ 600	1,300% 이하	고한시장 및 고한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50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 300	200 ~ 350	250% 이하	(구) 고한초교 주변
	준주거지역			500% 이하	

5)높이(변경)

구분		최고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중심지 형성지역	일반상업지역	12층 이하	-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기타 상업지역			평균층수 18층이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6)배치(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

1)고한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2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 경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2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 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50% 허용 : 3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2(여객자동차정류장)	
			건폐율	◦ 6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2)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50%	
			용적률	◦ 기준(허용) : 400%	
			높 이	◦ 12층(4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5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 경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 경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3)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8층(28m) ~ 10층(35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 권장용도 E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기준 : 300% 허용 : 3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70%	
			용적률	◦ 5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3)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D4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 정	D8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대상지 좌측에서 2m	

5)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500% 허용 : 500%~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E6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E7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E8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6)고한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 정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용 도	◦ 아파트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15층(53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용 도	◦ 아파트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 위치 및 조성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2) 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 지주형 간판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셔터 권장	-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
경사형 지붕	◦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
투수성 포장	◦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고한리1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A1	고한읍 고한리 15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A2	고한읍 고한리 273-1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2)고한리2-1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B1	고한읍 고한리 142번지 일원	◦ 공개공지 - 주차입구 전면부로 위치변경, 면적 : 890㎡	
			◦ 주차출입구 : 대상지의 전면부에 8m와 15m 폭원지정 - 차량흐름을 최대한 고려	
			◦ 보행주차출입구 : 전면부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보행통행이 가능한 출입구 조성	
			◦ 차량동선 : 이동 및 상충을 최소화하도록 지정	
			◦ 보행동선 : 차량의 이동과 분리, 안전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지정	
기 정	B3	고한읍 고한리 136-2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B4	고한읍 고한리 128-2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C1	고한읍 고한리 127-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2	고한읍 고한리 124-2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3	고한읍 고한리 274-8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4	고한읍 고한리 125-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5	고한읍 고한리 120-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6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7	고한읍 고한리 106-29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8	고한읍 고한리 106-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4)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D1	고한읍 고한리 10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2m)	
기 정	D3	고한읍 고한리 88-5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D4	고한읍 고한리 88-1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D5	고한읍 고한리 91-2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 정	D6	고한읍 고한리 94-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기 정	D7	고한읍 고한리 96-5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 정	D8	고한읍 고한리 96-76번지 일원	◦ 차폐조경(B=2m)	

5)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E1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E2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E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기 정	E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E5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 획지세장비 1:0.5 범위내로 계획 (전면도로 접하는 길이 = 1)	
기 정	E6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E7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 정	E8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 공개공지	

6)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F1	고한읍 고한리 66-3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 정	F2	고한읍 고한리 65-4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 정	F3	고한읍 고한리 65-1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F4	고한읍 고한리 65-10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2. 사북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68,92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68-3철 일원	56,41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6,779	강고 제77호 (2002.4.8)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 분	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합 계	222,109	29,081	189,165	1,251	2,612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68,920	-	68,920	-	-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56,410	-	56,410	-	-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96,779	29,081	63,835	1,251	2,61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2	1,702	-	-	5	735	7	967
대로	-	-	-	-	-	-	-	-
중로	7	1,268	-	-	2	588	5	680
소로	5	434	-	-	3	147	2	287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8.5	주간선도로	7,230 (330)	중로 1-3 고한리 373-2대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일반 도로	고한초교	강고83호 (02.4.15)	
기정	중로	2	4	17	보조 간선 도로	258	2호 광장 사북리 356-9대	중로 3-5 사북리 356-14대	일반 도로	스카이 호텔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5)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3	중로 2-4 사북리 356-31대	중로 3-1 사북리 351-32도	일반 도로	사북 새 마을회관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0	12	보조 간선 도로	645 (288)	중로 1-1 사북리 381-2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1-18도	일반 도로	사북1교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12	9~ 13	국지 도로	57	소로 1-4 사북리 356-241도	중로 2-4 사북리 356-6도	일반 도로	호텔인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3	14	국지 도로	187	중로 3-12 사북리 354-8대	중로 3-10 사북리 354-11도	일반 도로	동원 복지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5	중로 3-5 사북리 351-36대	중로 3-7 사북리 35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72	중로 3-13 사북리 354-34대	1호 공공공지 사북리 354-30대	일반 도로	-	강고98호 (05.5.13)	
기정	소로	2	54	8.5	국지 도로	349 (30)	소로2-53 사북리 345전	광장1 사북리 345전	일반 도로	-	정선고110호 (20.5.22)	
기정	소로	3	5	6.5	국지 도로	314 (121)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중로 2-4 사북리 354-21대	일반 도로	-	정선고29호 (02.5.16)	
기정	소로	3	36	4	국지 도로	166	중로 2-4 사북리 356-27	중로 2-4 사북리 356-119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3	사북 지장천변 3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3,103	정선고 제29호 (02.5.16)	

다. 광장

(1)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국도38 사북1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0대 일원	9,081 (1,125)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2	하이원 진입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6-2도 일원	4,084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9	사북3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1-36대 일원	175	강고 제300호 (03.12.13)	

라. 공공공지

(1)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공공공지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2,515	강고 제98호 (05.5.13)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414	1	389	2	479	3	546
중로	4	976	-	-	1	430	3	546
소로	2	438	1	389	1	49	-	-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	15	보조 간선 도로	462 (430)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2	12	보조 간선 도로	903 (39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30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건고26호 (76.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2)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3	8~ 12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장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153-11임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 도로	사북역전	강고26호 (79.2.8)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주차장

(1)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사북 역전1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66-72도 일원	1,404	강고 제300호 (2003.12.13)	

다.광장

(1)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광장	경관 광장	사북읍 사북리 452전 일원	781	정선고146호 (20.6.26)	지구단위계획구역 (448m ²)

3)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가.도로

(1)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1	2,386	2	418	2	309	7	1,659
대로	1	106	-	-	-	-	1	106
중로	2	1,068	-	-	1	165	1	903
소로	8	1,212	2	418	1	144	5	650

(2)도로 결정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 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 도로	밤바위골 진입부	강고173호 (78.12.7.)	
기정	중로	2	3	15	보조 간선 도로	1,720 (165)	대로 3-1 사북리 305-4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452-36도	일반 도로	사북여중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2	7~ 12	보조 간선 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20	10	국지 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 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 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3-4 사북리 307-1도	일반 도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1	24	10~ 12	국지 도로	499 (82)	소로 1-3 사북리 452천	소로 2-53 사북리 산143-11임	일반 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29	6	국지 도로	227	소로 1-1 사북리 344-133대	중로 3-2 사북리 344-67대	일반 도로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3	33	6~ 7	국지 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 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34	6	국지 도로	68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기정	소로	3	39	4~ 6	국지 도로	201	중로 3-2 사북리 317-131주	소로 3-33 사북리 317-262대	일반 도로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주차장

(1)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합계		-	-	3,074	-	
기정	20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5-1전	1,160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1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36대 일원	61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2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169대 일원	1,30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다. 녹지

(1)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종 일원	26,667 (3,871)	강고 제83호 (2002.4.15)	

다. 하천

(1)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4	하천 (북일천)	소하천	사북읍 사북1리 18번지 일원	사북읍 사북1리 306-6번지 일원	-	5.6	9~ 20	110,183 (2,361)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 계획

(1) 단위대지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	◦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업지역	◦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동건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2) 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여러 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3)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위치 지정	

4)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채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 계획도로를 추가로 조성 추가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채납 ※ 용적률은 기준 500%, 허용 600% 층수는 15층(53m)이하, 건폐율 80%, 불허용도1, 권장용도A로 규제함 ※ 전면으로는 10m의 건축한계선을, 대상지 좌측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함 -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획지별 단일건축물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4,494	
기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175	
기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1,012	
기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10,736	
기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3,103	
기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3,636	
기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700	
기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4,282	
기정	A9	사북읍 사북리 367-6번지 일원	485	
기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11,348	

2)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B1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1,650	
기정	B2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2,975	
기정	B3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8,561	
기정	B4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9,542	
기정	B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1,404	
기정	B6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8,874	
기정	B7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6,754	

3)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가구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2,632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2,919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12,316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4,516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1,683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12,237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8,222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13,650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5,118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163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4,690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866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456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3,269	

④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

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

1) 불허용도(변경)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기 정	변 경	
1 일반 상업 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등)
2 고한 1구역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좌 동
3 일반 주거 지역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창고시설(100㎡이상)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제외)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좌 동

2) 권장용도(변경없음)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 전층권장용도

3)건폐율(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4)용적률(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일반상업지역	400 ~ 500	500 ~ 600	1,300% 이하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00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 ~ 200	200 ~ 250	250% 이하	구 사북초등학교 주변
	준주거지역			500% 이하	

5)높이(변경)

구분		최고높이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중심지 형성지역	일반상업지역	12층 이하	-	정선군 조례에 상당한 수준으로 변경
기타 상업지역			평균층수 18층이하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6)배치(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
형도면고시 조서(변경)

1)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전면도로에서 1m 삭제 : 오류정정)	
변 경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전면도로에서 1m 삭제 : 오류정정)	
기 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용 도	◦ 광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블록 왼쪽면에서 2m	
기 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삭제)	
변 경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삭제)	
기 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A8	사북읍 사북리 356-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A9	사북읍 사북리 356-56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A9	사북읍 사북리 356-56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1 / 권장용도 A(특별계획구역)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5층(53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0m 등	
변 경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1 / 권장용도 A(특별계획구역)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0m 등	

2)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오류사항 정정)	
변 경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오류사항 정정)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 500%, 허용 : 55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B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500%, 허용 : 500%~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3)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 경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 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변 경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344-15학) 지정	
변 경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344-15학) 지정	
기 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250% 이하	
			높 이	◦ 18층 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 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변 경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하천경계부터 4m	
변 경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하천경계부터 4m	
기 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변 경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변 경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1,300% 이하	
			높 이	-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⑤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 위치 및 조성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2)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 지주형 간판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서터 권장	-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
경사형 지붕	◦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
투수성 포장	◦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3)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사북리1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기 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 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 차폐조경(B=2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기 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기 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기 정	A9	사북읍 사북리 35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 특별계획구역 ◦ 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전면공지	

2)사북리2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B1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B2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B3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 정	B4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B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B6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 정	B7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3)사북리3 지구단위계획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 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 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 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 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 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 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 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정선군 고시 제2023-21호

지적재조사사업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낙동1·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정 선 군 수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
2. 지적재조사지구 명칭 : 낙동1·2·3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구 분	사 업 량	사 업 위 치	비 고
낙동1지구	394 / 451,390m ²	정선군 남면 낙동리 174-4 일원(선평역 일원)	
낙동2지구	259 / 501,589m ²	정선군 남면 낙동리 364 일원(선명수산 일원)	
낙동3지구	382 / 904,286m ²	정선군 남면 낙동리 613 일원(낙동분교 일원)	
합 계	1,035 / 1,857,265m ²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33-560-2241, 2265)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3-238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선군 「남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정 선 군 수

- 사 업 명 : 남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시 행 자 : 정선군수
-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1,044필지 / 1,143,787.8㎡
- 공람기간 : 2023. 2. 28. ~ 2023. 3. 14.(15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청 행정국 민원과(지적재조사팀)
- 공람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정선군 공고 제2023-243호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자연재난 규모의 확대 등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 및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 부각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6조)
- 나.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기준 마련(안 제7조, 제8조)
- 다. 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3. 3. 2. ~ 2023. 3. 2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정선군수(안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수(안전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28), 팩스(033-560-2174)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2023-243호

정선군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상가건물 등의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지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건물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또는 상

가건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출입구에 관리주체가 침수 방z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z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z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 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z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z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z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상가건물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z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군수가 설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침수 방z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z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

체에게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23. 1. 5.] [법률 제18685호, 2022. 1. 4., 타법개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 가. 삭제 <2017. 10. 24.>
-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시행 2022. 12. 2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85호, 2022. 12. 29.,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간"이란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구를 말한다.
 - 가. 영 제8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 나.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가 되었던 지역 중 동일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와 관리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구

3. "지하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하도로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지하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으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 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 공간을 말한다.

5.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로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지하도상가"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로서, 도로 등의 지하에 설치된 대규모 상점을 말한다.

7. "도시철도 및 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및 철도로서, 레일로 된 선로 위에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설비 및 수송체를 말한다.

8. "변전소"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건축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변전소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전설비로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하여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내의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형별 침수 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 2022. 8. 4.] [법률 제1883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

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8조(조례)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정선군 공고 제2023-284호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8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단위업무 및 전결권자 등을 재정비하여 사무처리 권한배분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및 협조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업무 효율성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팀 신설, 이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전결사항 정비

〈 2023.2.1. 조직개편 현황 〉

- ▶ 신 설 : 교통관리사업소
- ▶ 분 리 : 문화관광과 → 관광과 / 문화체육과
- ▶ 직속기관 분리 :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 ▶ 국 변경 : 안전과(행정국), 전략산업과(시설국)
- ▶ 부서 명칭 변경 : 여성청소년과 → 가족행복과

나. 직위별 사무전결 현황

사무 수	전결(결재)권자					
비율	군 수	부군수	국(소)장	담당관·과(소)장	팀장	담당자
2,591	326	258	544	1,353	95	15
100%	13%	10%	21%	52%	4%	1%

다. 국장의 사무배분의 원칙 신설(안 제3조)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2. 부군수의 전결사항
 - 다. 국별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국·소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 다. 주요 인·허가 사항
 -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 (이하 동일)

라. 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조문 신설로 업무효율 증진(안 제4조의2)

제4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0일(12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실·과·소장, 담당자”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소)장, 실·과·소장, 담당자”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다.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을 “다. 국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소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
-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 다. 주요 인·허가 사항
-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제3조제4호 중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 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집행
-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u>정선군</u> <u>수(이하 “군수” 라 한다), 부</u> <u>군수, 실·과·소장, 담당자</u> 에 대 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 음과 같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 ----- 국 (<u>소장</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군수의 전결사항 다.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 성 정밀 검토	2. 부군수의 전결사항 다. <u>국별 업무수행에 필요한</u> <u>조정·감독</u> 라. (현행과 동일)
3.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 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과·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아. (생 략)	3.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u>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u> <u>따른 구체적 집행</u> 나. <u>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u> <u>악 및 관리</u> 다. ~아. (현행과 동일)
	(신 설) 제4조의2(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 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 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 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 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선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민선8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관 전 증 표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3-298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안)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안) 공람·공고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일원의 「정선 young;농 플랫-홈 생활SOC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일괄지정으로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주요내용

가. 사업구역의 명칭

1) 사업구역명 : 정선 young;농 플랫-홈 생활SOC조성사업

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750-31번지 일원

2) 면 적 : 1,125.1m² (크리에이터랩:630m², 모두랑센터:495.1m²)

다. 시행자 : 정선군수

2. 관련도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3.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기획관실, 북평면행정복지센터

4. 열람기간 : 군보게재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2023. 03. 16 ~ 2023. 03. 31)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기획관실에 서면 제출

6.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기획관실(033-560-22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3-304호

2023년 정선군 명예군민 추천 공고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정선군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정선군 명예군민 수여 조례」에 따라 2023년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 선 군 수

1. 주 관: 정선군

2. 추천기간: 2023. 3. 13.(월) ~ 4. 21.(금)

3. 명예군민의 자격

○ 정선군정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동포, 정선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명예군민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1. 추천일 현재 우리군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
2.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정선군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4.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대상자 추천

○ 정선군 산하 기관 및 유관기관·단체,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함.

○ 추천기한 : 2023. 4. 21.(금)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 miran6971@korea.kr

- 우 편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총무행정관실

5. 추천 구비서류

-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 1부.
- 주요 프로필 1부.

6.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및 수여 방법

- 추천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는 최종 정선군의 의결을 거쳐 수여
 - ※ 제41회 정선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수여(예정)

7. 제출처(문의처)

-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033-560-2232)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2길 21

정선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식

	성 명 (한자)	주 소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직 업)	비 고 (연락처)								
*사진		정확하게작성 (우편물 발송 시 활용)											
공 로 내 용													
○ ○ ○ ○													
〈추천자 인적사항〉 <table border="1"> <tr> <td>성 명</td> <td></td> <td>연락처</td> <td></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td> </tr> </table>						성 명		연락처		주 소			
성 명		연락처											
주 소													

※ 주요 프로필 포함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3호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가진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양봉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양봉농가의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033-560-2180
- 팩 스: 033-563-5320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2.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제품 및 토종벌 산업 육성·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증식 및 보호·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정선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훈련·컨설팅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4호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7 / 033-560-2180
- 팩 스: 033-563-5320
- 이 메 일: acesd07@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3.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톱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톱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톱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5호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가 본청 정원에 반영되어(2022.12.23. 일부개정) 본 조례에서 삭제

2. 주요내용

-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및 안 제4조제3항 신설)
 - 전문위원의 지휘체계 규정
 - 전문위원 본연의 업무 규정 외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 신설
- 정책지원관의 직급 수정(안 제5조제4항)
 - 7급 → 7급 이하
- 직원의 정원 규정 사항 수정(안 제6조)
- 별표의 삭제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무과장”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제4항 중 “7급” 을 “7급 이하” 로 한다.

제6조 중 “별표와 같다” 를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다” 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전문위원) ① 정선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u>사무과장</u> 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생략) <u><신설></u>	제4조(전문위원) ① ----- ----- -- <u>위원장</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u>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③ (생략)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⑤ (생략)	제5조(정책지원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7급 이하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u>별표와 같다.</u>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 ----- 「 <u>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u> 」에 따른다.

<삭 제>

[별표]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 배정표 (제6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의회사무과
합 계			13
일 반 직			13
일반직	5급	소 계	2
		행 정	2
	6급	소 계	3
		행 정	3
	7급	소 계	2
		행 정	2
	8급	소 계	3
		행 정	1
		속 기	1
		운 전	1
	9급	소 계	3
		행 정	1
		시설관리	1
		운 전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 ① 시·도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도의 의회사무처, 시·군·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16.>

- ② 시·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④ 시·도와 시·군·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3.10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일 2020.4.1]]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2016.7.29, 2016.12.22., 2017.6.29, 2017.12.19, 2018.04.16, 2018.12.21., 2019.12.02., 2020.12.21., 2021.06.22., 2022.11.09.>

1. 집행기관의 정원 : 668명 <개정 2016.12.22., 2017.6.29, 2017.12.19, 2018.04.16, 2018.12.21, 2019.12.02., 2020.12.21., 2021.06.22., 2022.01.05., 2022.11.09., 2022.12.2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신설 2022.12.23.>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6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조항 정비
-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의 경력 근거 수정(안 제12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수정
 -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삭제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특별휴가 신설(안 제16조제4항제1호)
 -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 및 재충전 기회 제공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10일간의 유급휴가 신설
-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신설(안 제16조제7항 신설)
 -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기타 인용 조문 정비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59조”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16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별표 3을 삭제한다.

<삭 제>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1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생략)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제1항----- -----. -----.
제16조(특별휴가) ①·② (생략)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	제16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영 제7조제1항 -----

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할 수 없다.

<신 설>

1. ~ 3. (생 략)

⑤ · ⑥ (생 략)

<신 설>

-----.

④ ----- 5년 -----

----- 영 제7조
제2항-----

-----.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렸을 경우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개정 2013.12.11, 2018.12.18] [[시행일 2019.1.1]]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22. 2. 17.>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 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 3)의 경력: 100퍼센트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9)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 한한대는 70퍼센트 이내. 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7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의회장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국내 출장 여비 지급 규정 정비(안 제3조)
 - 국내여비 지급 기준 개정(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별표 1, 별표 2 삭제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을 “(국내여비의 지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는” 을 “여비는 영” 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u>운임과 숙박비</u> 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u>국내여비의 지급</u>) ----- ----- - <u>여비</u> 는 영 ----- -----.

<삭 제>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제2조 관련)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삭 제>

[별표 2]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율로 지급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등)

-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보상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21.6.8] [[시행일 2021.12.9]]
 -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실비보상 등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1] [[시행일 2013.6.12]]
- [전문개정 2008.12.31]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에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舁船) 및 부두(埠頭) 사용료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공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1.30]
- ③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는 부족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공무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개정 2013.12.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복지점수를 사용하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3.12.11,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1.10]

제12조의2

삭제 [2021.5.25]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0]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9][[시행일 2011.7.1]]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 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2.9][[시행일 2011.7.1]]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1.6]

[전문개정 2010.11.10]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3-8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정선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에 따라 정선군의회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정비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안 제8조)
 - 20세 이상 → 18세 이상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 4, 별표 5의1, 별표 7의2)
-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6조)
- 기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표준안에 따른 내용 수정(별지 제2호, 별지 제3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3. 예고기간 : 2023. 3. 13. ~ 3. 18.(초일불산입 / 5일간)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8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 전 화: 033-560-2503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yun2003@korea.kr
- 홈페이지
 - 정선군의회 <https://council.jeongseon.go.kr/>
 - 정선군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 5의1와”를 “별표 5의1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5의3와”를 “별표 5의3과”로 한다.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6조제2항 전단 중 “제8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8조제3호”를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7조의5제2항”을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1,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3과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 ----- ----- -----.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u>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 이상	제8조(응시연령) ----- ----- -----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u>법 제27조제2항에</u>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 ----- -----.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다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1와 같다.

②·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 별표 5의1
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학력별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⑤ -----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1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⑦ (생략)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와 같다.

⑨ (생략)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옆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

----- 한다.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별
표 5의3과 -----.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조제2항-----.

-----.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옆 제17조제1항제3호 -----

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
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
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
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
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

1. ~ 5. (현행과 같음)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
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
도직규정 제26조-----.

□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전산직렬> (대상직류 : 전산, 데이터) : 삭제

직류	계급	현 행	개정안
전산·데이터	5급 이상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u><삭제></u>
	6·7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u><삭제></u>
	8·9급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u><삭제></u>

<해양수산직렬> (대상직류 :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추가

직류	계급	현 행	개정안
일반선박	6·7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u>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u>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u>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u> 항해사1급 내지 4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u>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u> 기관사1급 내지 4급

<항공직렬> (대상직류 : 일반항공, 조종, 정비)

-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및 ‘자가용조종사’ 추가

직류	계급	현 행	개정안
일반 항공	6·7급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u>산업기사(항공)</u>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 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 비사, 운항관리사, <u>자가용조종사</u>
조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u>자가용조종사</u> ,
정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 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u>산업기사(항공)</u>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설직렬> (대상직류 : 지적)

-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및 8·9급 기준에 ‘기능사’ 추가

- [별표5의1]에만 규정된 자격증 종류(‘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기능사)를 직급별로 추가

직류	계급	현 행	→	개정안
지적	5급 이상	기술사(지적)		기술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사(지적)		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6·7급	기술사(지적)		기술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사(지적)		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u>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8·9급	기술사(지적)		기술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산업기사(지적, <u>측량 및 지형공간정보</u>) <u>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u>

<조리직렬> (대상직류 : 조리)

- 6·7급 기준에 ‘산업기사’ 및 8·9급 기준에 ‘기능사’ 추가

직류	계급	현 행	→	개정안
조리	6·7급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u>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u>
	8·9급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u>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u>

□ (별표5의1)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 타 직류와 형평성을 고려해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3%)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분석기사' 추가

직류	직류	현 행	→ 개정안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u>빅데이터분석</u>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능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u>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u>

□ (별표7의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전산직렬 신설)

- 특수직급 응시자격증(별표4)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전산 직렬'란 신설(사회복지 직렬란 다음)

직류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u>빅데이터분석</u>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이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u>기능사 :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u>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인	인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임용권자)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 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 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

에 체크(√)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 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주 거 소	⑦ 최 종 출 신 학 교 명	⑧ 특 기	⑨ 병 열 필 요 성	⑩ 희 망 기 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 뢰	회 보	송 부	제1 회	제2 회	제3 회	제4 회	제5 회	연월 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 ⑪ 신원조사 항목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신원조사 대상자만 해당함

[별지 제6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 와 “미흡”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 로 평정한 항목의 개 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 “중” ,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1. 3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전문개정 2009. 2. 6.]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개정 2004.10.13., 2008.10.16., 2013.12.10., 2022.11.07.>